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20237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20237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8가합5743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권상경

변론 종결 2020. 11. 11.

판결 선고 2021. 1.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8가합5743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D 주식회사, 이하 같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180,881,2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80,881,2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이하의 '피고 A 주식회사' 또는 '피고 A'를 각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또는 '제1심 공동피고 A'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이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하단 제1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피고'로 고치고, 제5면 제10행 이하의 '피고 C'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3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3자로의 낙찰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에 위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가) 앞서 든 법리에 앞서 든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인바,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곤란할 때 예외적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물반환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거둘 수 있는 것보다 가액배상으로 채권자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아무런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의 만족을 전혀 얻지 못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양수인인 수익자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 전후에 사해행위로 취득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한다고 하여 그 저당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수익자로 하여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일반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애당초 일탈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취소채권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 제도가 원상회복을 통하여 수익자를 징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수익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앞서 본 대법원 2004다67806 판결 참조)하여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자신이 받은 배당금의 액수만큼만 가액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2. 28.에 피고 C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대여금 12억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이후 2018. 7. 3.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1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가액배상 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매매계약 부분도 없게 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박성준

판사한기수

별지